#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84 발의연월일: 2024. 9. 10.

발 의 자:최수진·강선영·서지영

김예지 · 임이자 · 박준태

조정훈 • 박충권 • 인요한

성일종 의원(10인)

# 제안이유

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・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융합한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・제조・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을 말하며,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 받고 있음. 또한, 기존 산업 영역을 넘어 화학・환경・에너지 등 전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력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음.

이에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책임있는 기술개발·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합성생물학 생태계를 육성하고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산업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하여 5년마다 합성생물학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산·학·연이참여하는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제5조, 제6조, 제12조).
- 다.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사업 추진, 기술지도 작성,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, 제15조, 제16조).
- 라.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 설치 및 운영,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및 활용지원, 표준화, 전문인력 양성, 국제협력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제21조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, 제25조, 제26조).
- 마. 합성생물학의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침 수립과 책임있는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하고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, 제28조, 제30조).

# 합성생물학 육성법안

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합성생물학"이란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·제작·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을 말한다.
  - 2. "바이오파운드리"란 합성생물학의 설계·제작·시험·학습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표준화·고속화·자동화한 바이오연구 지원시설을 말한다.
  - 3. "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"란 합성생물학 연구를 위한 실험, 조사, 수집과정 또는 결과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 로서,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 보를 말한다.
  - 4. "관계 중앙행정기관"이란 기획재정부, 교육부, 과학기술정보통신

- 부, 외교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환경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특허청, 질병관리청, 농촌진흥청, 산림청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·연구기관·기업 및 개인 (이하 "합성생물학 연구주체"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 제2장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 체계

- 제5조(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.
  - 1.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중·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
  - 2. 합성생물학 동향·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
  - 3.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

항

- 4. 합성생물학의 기초·원천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, 융복합연구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- 5. 합성생물학 관련 기술이전 · 사업화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
- 6. 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바이오파운드리 구축・활용에 관한 사항
- 7. 합성생물학 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・활용
- 8. 합성생물학 관련 인력·정보·통계·표준 등 기반 조성 및 지원 에 관한 사항
- 9. 합성생물학 관련 산업계·학계·연구계 간 협력에 관한 사항
- 10. 합성생물학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
- 11. 합성생물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
- 12. 합성생물학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
- 13. 그 밖에 합성생물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
- ③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,「생명공학육성법」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 종합정책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도 같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의 수립과 시행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

- 중앙행정기관이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 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합성생물학 실무위원회) ①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, 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실무추진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 -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개선 권고 등) 정부는 합성 생물학 육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

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.

- 제9조(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합성생물학에 관한 국내외 기술적·산업적·정책적·제도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전망·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통계작성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기업·대학·연구기관·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·단체 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이 경제·사회·문화·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

사전에 평가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대한 국내외 기술수준을 평가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와 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분야의 산업계·학계·연구계 등 관계기관 간의 정보교류,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(이하"발전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정책전문기관의 지정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의 수립·조정 및 관련 기술개발·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(이하 "정책센터"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책센터가 다

-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
- 2. 정책센터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
- ④ 정책센터의 업무,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.

#### 제3장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

- 제14조(연구개발사업 추진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계별·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  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5조(기술지도의 작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관한 기술개발 전략의 수립,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성생물학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

지도(技術地圖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 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, 산업계·학계·연구계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·발전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(이하 "거점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점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- 1. 임무중심형·도전형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핵심 장비·부품 개 발
  - 2. 거점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합성생물학 원천기술개발
  - 3. 거점기관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, 사업화 및 창업지원
  - 4. 합성생물학 공동연구개발 시설 및 실증시설의 설치 · 운영
  - 5. 합성생물학 관련 중소・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원
  - 6. 산업계·학계·연구계 간의 공동·융복합 연구 촉진
  - 7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거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- 1.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2. 거점기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- ⑤ 거점기관 지정의 요건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.
- 제17조(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기술개발의 난이도 또는 기술개발의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.
 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- 제18조(혁신발전 지원)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하여 국내기업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산업·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 체의 기술혁신과 역량강화 및 동반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 원할 수 있다.
  - 1. 제16조에 따른 거점기관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운영기술, 지식 또는 노하우 전수

- 2. 합성생물학에 관한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
- 3. 합성생물학에 관한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
- 4. 그 밖에 민간의 혁신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19조(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)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, 기업·대학·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합성생물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 제4장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

- 제20조(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) 정부는 합성생물학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·관리·공동 사용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- 제21조(바이오파운드리 설치 및 운영)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정부는 제1항의 바이오파운드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계·학계·연구계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. 이 경우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 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  - ③ 정부는 제1항의 바이오파운드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을 위

- 하여 산학연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시설과 장비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의 바이오파운드리 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출연금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의 바이오파운드리 구축·운영,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(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) ①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를 생성한 합성생물학 연구주체 및 제21조에 따른 바이오파운드리 운 영기관은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.
  - ② 복수의 연구주체가 공동연구개발을 통하여 합성생물학 연구데이 터를 생성한 경우, 공동연구에 참여한 각 연구주체는 합성생물학 연 구데이터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  - ③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가 연구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를 생성한 연구주체와 제3자 모두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제23조(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지원)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 - ②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생성・수집, 가공・분석, 공유・

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산업계·학계·연구계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- 제24조(합성생물학 표준화) 정부는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, 상호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  - 1. 합성생물학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의 보급ㆍ확산
  - 2. 합성생물학 표준화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· 연구
  - 3.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
  - 4. 그 밖에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
- 제25조(전문인력 양성·확보)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교육·훈련 프로그램의 개설,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·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② 정부는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계·학계·연구 계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
  - 2.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 사업

- 3. 합성생물학 연구시설·장비와 관련한 인력양성사업 및 관련 전문 교원 확충
- 4. 그 밖에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
- 제26조(국제협력 추진) 정부는 합성생물학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국제교류·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,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### 제5장 합성생물학 책임관리 등

- 제27조(연구개발 지침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대한 실험연구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분명히 하여 생물학적 위험성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, 윤리적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(이하 "연구개발 지침"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지침을 작성할 때 미리 산업계·학계·연구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지침이 산업계·학계·연구계에 널리 보급·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주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수 있다.

- ④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28조(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성과 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질 노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에 대한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. 이때 모니터링 결과 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  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14조제2항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 - ⑤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통보해야 한다.

-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모니터 링 방법·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9조(이해관계자 의견수렴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30조(사회적 이해증진 등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, 학생 등에 대한 체험·교육·경진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
# 제6장 보칙

- 제31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기관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32조(벌칙적용 등 공무원 의제) 제31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「형법」

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 원으로 본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합성생물학 육성법」에 따른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합성생물학 분야의 중요정책